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사회보장급여의이용·제공및
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
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은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병역 복무 자료, 실종아동 등에 관한 자료 및 전기 사용량 변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 등을 추가하는 한편,

노인,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추가하고,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정보에 같은 법에 따른 통합지원에 관한 신청·발굴 및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5. 9. 26. ~ 11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5의2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

별표 2 제1호라목 중 “「한국전력공사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장이”를 “「한국전력공사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”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거목을 더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별표 1 제12호, 제21호,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

너. 「한국전력공사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주택용(주거용으로 한정한다) 전기료 체납 추이,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

별표 3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14.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

별표 4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14.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
따른 통합지원 신청·발굴·조사에 필요한 정보, 같은 법 제11조에
따른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필요한 정보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통
합지원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 및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
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
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144